주식회사 하나투어
정 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회사")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HANATOUR SERVICE INC. 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여행업(일반 여행알선업)
2.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
3. 토산품 판매업
4.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5.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6. 부가 통신업
7.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보급업
8. 통신 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9. 인쇄 출판업
10.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행업
11. 운 수 업(전세버스 운수사업)
12. 관광관련 전문인 양성 학원운영업
13. 인터넷 사업(컨텐츠구축 및 제공, 인터넷 마케팅업)
14. 전자상거래업
15. 광고업(인터넷 광고업, 옥외광고업)
16. 정보처리업 및 정보통신 관련업
17. 홈페이지 구축 및 웹 호스팅업
18. 창고업
19. 관광호텔업 및 관광숙박업
20. 관광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경영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운영
21. 관광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경영에 필요한 사업
22. 국내·외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개발, 운영 및 자산관리업
23. 분양대행업
24.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25.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26. 영화,방송,비디오, 기타 문화상품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작, 유통업
27.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
28. 공연장 운영 및 운영 대행업
29. 공연기획업
30. 캐릭터사업
31. 전시·행사 대행업
32. 인터넷방송사업
33. 관광개발 및 기타 경영, 마케팅 자문, 기획 및 컨설팅업
34. 교육서비스
35.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
36. 상품권 매매업
37. 웨딩컨설팅업
38. 유원지 운영업
39. 종합레져시설 및 운영관리업
40. 관광지개발사업
41. 종합휴양업
42. 국제회의기획업
43. 자동차야영업
44. 보세품 및 관광상품 판매업
45. 숙박업
46. 숙박예약서비스업
47. 포털 및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48. 프랜차이즈업
49. 음식점업
50. 상가임대업 및 전대업
51. 문화,예술,스포츠 행사 관련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52.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판매업
53. 공연,영화 등 문화사업 제작, 투자업
54. 각종 행사와 문화사업의 주최, 스폰서 및 행사대행업
55. 공연 판권 수입 및 중개업
5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중개 알선업
57. 회원권판매 및 중개알선
58. 유학알선업
59. 평생교육시설 운영
60. 대부업 및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61. 전자금융업
62. 공연, 콘서트, 전시 등의 기획 및 홍보 대행업
63. 신용카드업

64. 부동산개발업
65. 보험대리점업
6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6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tourcompany.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만오천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의 주식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이익배당우선주식)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그 수를 삼백오십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 일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제8조의2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제8조의3, 제8조의4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환비율 조정 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들은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제8조의2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제8조의3, 제8조의4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1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이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②-2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②-1의 1호와 동일함.
2. ②-1의 2호와 동일함. 다만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8조의3에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해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7.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5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6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의 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8조(소집시기)
<삭 제>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

라 대표집행임원이 소집한다.
② 대표집행임원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머니투데이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이 한다. 단, 대표집행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표집행임원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분의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사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집행임원

제30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각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집행임원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의 수, 직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 해당 집행임원을 정관상 대표집행임원으로 본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퇴직금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4조(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기타 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집행임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 2(이사·집행임원의 의무)
① 이사 및 집행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 및 집행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및 집행임원은 재임중 뿐 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 및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⑩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장의 선임과 위원의 해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4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45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집행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수종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를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까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할 이익 준비금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3의 ⑥, ⑧은 2002년 3월 20일, 2003년 3월 18일, 2003년 10월 6일 부여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9조, 41조(제4항 및 7항은 제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